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9.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대구경북 과학기술 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1428	이인선의원	2024. 7. 5.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 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9.4.) 상정
	2201448	이인선의원	2024. 7.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 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9.4.) 상정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
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9. 9.)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대경과기원”을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7제1항에”를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의7제1항에”를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9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한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

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 <u>석사</u> 및 학사 과정을 둔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 ----- <u>전문석사·석사</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박사· <u>석사</u>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 <u>전문석사·석사</u> ----- ----- ----- ----- ----- -----.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u>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은 <u>제12조의7제1항</u> 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	⑤ ----- <u>제12조의7제1항 전</u> <u>단에</u> ----- ----- ----- ----- -----.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생략)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후단 신설>

-----.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

-----.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
-----전문석사·석사-----.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신 설>

<신 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

<신 설>

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
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
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
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
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
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